

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9 - 22호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고령운전자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 반납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교통문화운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문화운동 사업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을 신설함
(안 제5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을 자
진 반납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참조 : 산업
건설전문위원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산업건설전문위원실

(전화 042-270-5132, FAX 042-270-5049, E-mail : Ims1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조례안 : 붙임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고령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 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고령자 운전면허 사진반납자 지원) 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사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9월 1일 이후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하고 실효처리 된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시장은 교통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p> <p>1. ~ 5. (생략)</p> <p><u><신설></u></p> <p>6. (생략)</p> <p><u><신설></u></p>	<p>제5조(교통문화운동 사업)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사업</u></p> <p>7. (현행 제6호와 같음)</p> <p><u>제7조(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①</u>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1.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2.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3. 제44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5.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 5의2.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
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 해당된 경우
8.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9. 제87조 제2항 또는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10의2.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61조(특수폭행)·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경우
12.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13.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14. 이 법에 따른 교통단속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15.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16.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
17.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 사유가 있었던 경우
18.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요청한 경우
- 18의2. 제39조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9.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
다만,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의 대상이거나 효력정지 기간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생략>

□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의안명 :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 교통비 등을 재정지원하기 위한 정책 시행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교통안전법 제3조 제2항(국가등의 의무)

3.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우대정책으로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1회 지급 (1차년도 500명)

나. 추계결과 : 1차년도 50백만원에서 5차년도 300백만원까지 증가

다. 연도별 비용추계표 및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계	
세 입							
세 출	5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950,000	
교통카드지원	5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950,000	
재원조달							
국 비							
시비	지방세수입	5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950,000
	세외수입						
	지방채 등						
합계	50,000	100,000	200,000	300,000	300,000	950,000	

4. 그 밖에 비용추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없음

5. 작성자 : 공공교통정책과장